



대한건설협회

수신자 국군재정관리단

제목 군부대 오·폐수처리시설공사 관련 발주개선 건의

1. 공정하고 투명한 국방 조달행정을 위해 애쓰시며 건설산업의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각급 부대에서 발주하는 오·폐수처리시설공사의 경우 오·폐수의 고도처리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토목 또는 건축에 관한 종합건설업 등록을 요하는 대규모 구조물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해당 건설업자가 아닌 개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나 (수질)방지시설업자 등에 의한 시공을 허용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업 분류 및 등록의 취지나 목적을 훼손하고 시설물의 안전도 우려됩니다.

3.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오·폐수처리시설에 건축공사나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는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해당업종에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11.5월 건설공사와 개별법령상의 공사범위와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건설업의 범위와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보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 적용’토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국회 국토해양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 이에 향후 귀 단(국방부)에서 발주되는 오·폐수처리시설공사에 토목 또는 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해당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할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적정발주를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